

생산등록번호	경로장애인과 -41699	주무관	경로복지팀장	경로장애인과장	문화복지국장		
등록일	2022. 11. 10.				전결 2022. 11. 10.		
결재일	2022. 11. 10.	강진주	배종로	장병덕	강석광		
공개구분	비공개(5)	협 조 자					

**2022년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 
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및 홍보 계획**



**경로장애인과  
[경로복지팀]**

# 2022년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및 홍보 계획

## 1. 추진배경

- 2013년부터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신규 수급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나, 거주불명 등록기간이 길수록 소재 파악 및 생존여부 확인이 사실상 불가하므로 수급자로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 위주로 조사대상을 압축하여 보다 집중적인 조사 및 홍보 실시,
- 추진일정

사전준비단계 (11.07.~11.18.)	시	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세부계획 수립·통보(시군구→읍면동) 및 지자체 및 공단(지사) 간 협의	
발굴실시 (11.21~12.12.)	읍면동	사전조사(연락 및 방문 등) 실시 및 보고(11.21.~25일한)	
	시군구	현장조사(직접방문) 필요 대상자 선정(~11.29일한)	
	국민연금공단	거주불명등록 어르신 현장조사 실시(11.30.~12.12일한)	
발굴결과보고	1차	공단	현장조사 결과보고(~12.13일한)
		읍면동	발굴 결과 분석 및 보고 (12.14.~12.31일한)
		시	
		도	
	2차	시	발굴 결과 분석 및 최종보고(~23.2.10일한) ※ 12.31일 기준 신청 및 수급현황
		도	발굴 결과 분석 및 최종보고(~23.2.28일한)

## 2. 개요

- 기본방향
  - 거주불명등록자 중 수급자로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발굴의 실효성 제고
  - 생존국내거주 가능성이 희박한 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근 등록된 대상자를 우선 선정
  -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**발굴과 홍보를 병행 추진**
  - 거주불명등록자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 홍보 중심으로 진행

\* 취약계층 밀집지역, 유동인구 밀집지역, 노숙인 쉼터, 무료급식소 등에서 집중 홍보 실시

※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

- 거주불명등록자의 신분노출 우려 등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 확립 및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 추진
- 보건복지부,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성과 극대화 도모
- 내실 있는 현장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 간 대상자 선정, 업무일정 등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협의 추진

□ 조사대상

-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 이내\*인 기초연금 미수급자(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연금 지급 정지자 포함)
- \* 거주불명등록일 : 2018. 1. 1. ~ 2022. 9. 30.
- 등록기간이 5년을 경과하더라도 연락처가 있거나,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 대상에 포함

< 제외대상 및 제외사유 >

◆ 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(808명, '22.9.30. 기준)

- 거주불명등록자의 기초연금 수급 혜택이 목적이므로 수급자는 제외
- 다만, 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연금 지급 정지자는 포함

◆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5년이 경과한 자 (7,739명, '22.9.30. 기준)

\* 기초연금 수급여부 : (수급자) 351명, (미수급자) 7,388명

- 장기간 거주불명등록자인 경우 본인의 소재 파악은 물론,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가족 등의 연락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
- 행정안전부의 '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제도 개선' 방안('17.7.20. 발표)\* 및 「민법」 제27조를 참고하여 등록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함

\* (행안부 일부개정안)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후 5년이 경과하고, 그 기간 동안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 말소 처리 (「주민등록법」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완료 (2018.12.21.))

□ 추진기간 : '22년 10월 ~ 12월

- 사전준비 : 10.27. ~ 11.18.
- ※ 국민연금공단과 현장조사 관련 세부계획 협의 : ~11.11일한
- 발굴 및 홍보 실행 : 11.21. ~ 12. 9.
- 발굴 결과 분석 및 보고 : 12.13. ~ 31.
- ※ 기초연금 신청 및 수급결정 여부 등 최종 바를 결과 보고 : '23.2.28일까지

## □ 추진방법

- ※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조사 실시
- **(대상자 발굴)** 본인 및 가족 등을 통하여 연락이 되거나 거주지를 알게 된 경우 유선 안내 및 직접 방문 조사
- ※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족, 친지, 지인 등에게 무리한 연락은 지양
- **(홍 보)** 어르신 집단거주 지역(무료급식소, 쉼터 임시거주지 등) 등을 방문하고, 각종 지역행사 등과 연계하여 홍보
- **(신청유도)**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**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 운영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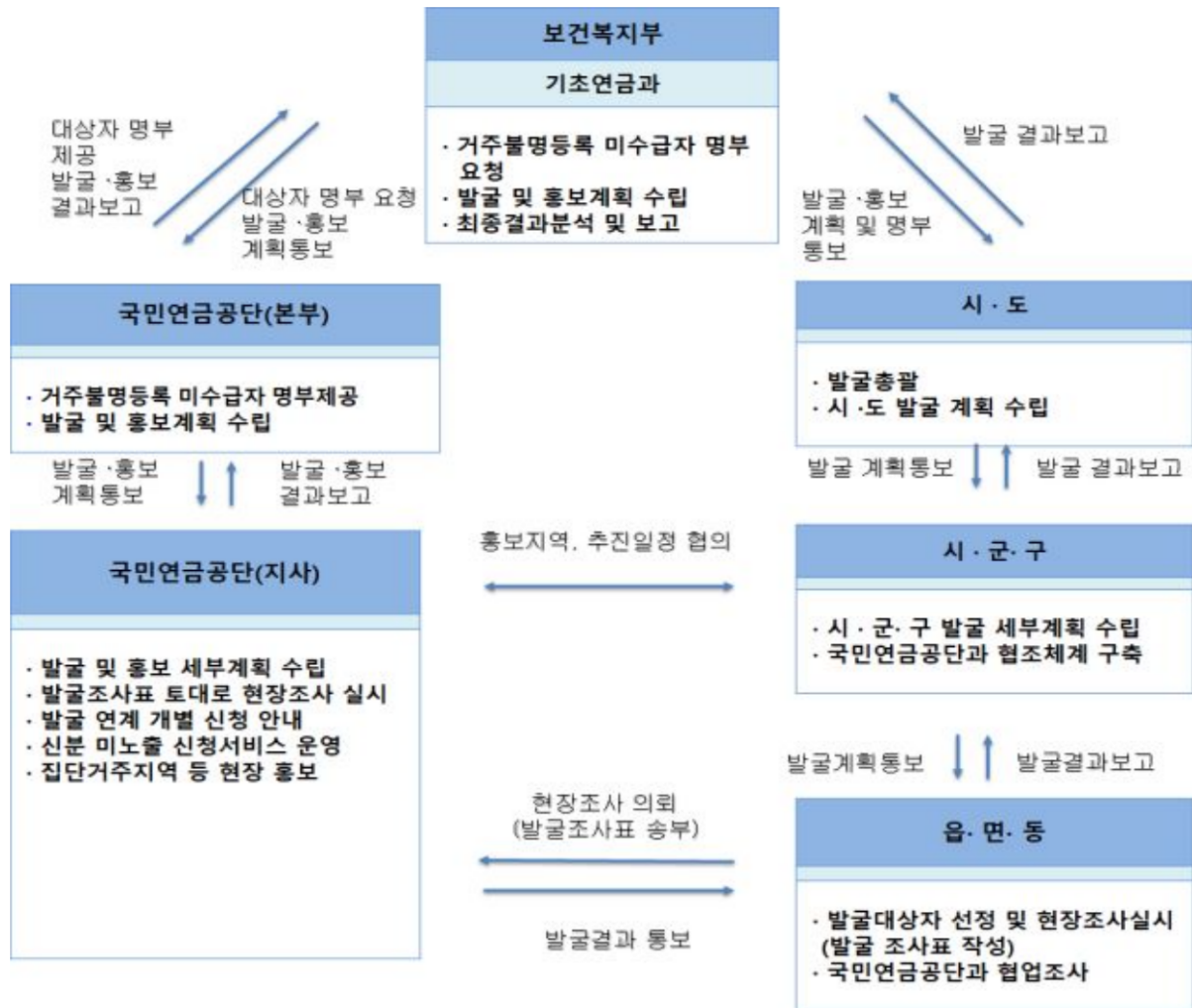
### <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 >

- ◆ 신분노출을 기피하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상담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받는 상담 서비스
- ◆ 콜센터(1355) 또는 반송용 우편(상담 예약 신청서)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지정한 시간 및 장소에 출장하여 실태조사 및 관련서류 징구
  - 실태조사서 및 신청서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

## □ 추진체계

- 지자체는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총괄을, 국민연금공단은 거주불명등록자 현장조사 및 홍보를 수행
  - (지자체) 발굴 총괄, 발굴 대상자 선정 및 결과보고
  - (국민연금공단) 현장조사 및 홍보 실시, 신분 미노출 서비스 운영

< 추진체계도 >



### 3. 세부 추진 계획

#### 1 발 굴

1. 사전준비 단계 : 2022. 10. 27. ~ 11. 18.

□ 시

- ※ 도에 통보받은 명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으므로 관련 문서는 비공개 문서로 관리 하고 목적 달성 이후 파기
- 거주불명 발굴 세부계획 수립, 읍면동에 계획 및 명부 통보(~11.18일한)
-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현장조사 대상, 규모, 업무분장, 조사일정 등 협의

※ 발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 간 명확한 역할분담, 협조체계 구축 필요

< 협의내용 >

- ◆ 거주불명등록자 중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수행할 현장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 - 현장방문 시 접촉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선별
- ◆ 업무처리 일정을 고려한 현장조사 대상자 통보기한
- ◆ 현장조사대상자 발굴 조사표(붙임 1) 및 대상자 명부 인수 방법
- ◆ 기타 업무처리 시 협조가 필요한 사항

2. 발굴 실시 : 2022. 11. 21. ~ 12. 12.

□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

-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실시
- (발굴체계) 읍면동에서 발굴 총괄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 지원

[읍면동]

- ①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 (5년을 경과하더라도 연락처·소재 파악이 가능한 대상자는 포함)를 대상으로 선정
- ② 사전조사(1차 : 연락·면담 시도)를 실시하고 현장조사(2차 : 직접방문) 필요 여부를 판단\*하여 대상자 선정
  - \* 가족·이웃 등을 통한 거주지 파악 가능한 대상자, 연락처는 없으나 최근 거주 불명등록된 자 등 종합적으로 판단
- ③ 현장조사 대상자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협의 및 통보
- ④ '현장조사 대상자 발굴조사표(양식1)'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의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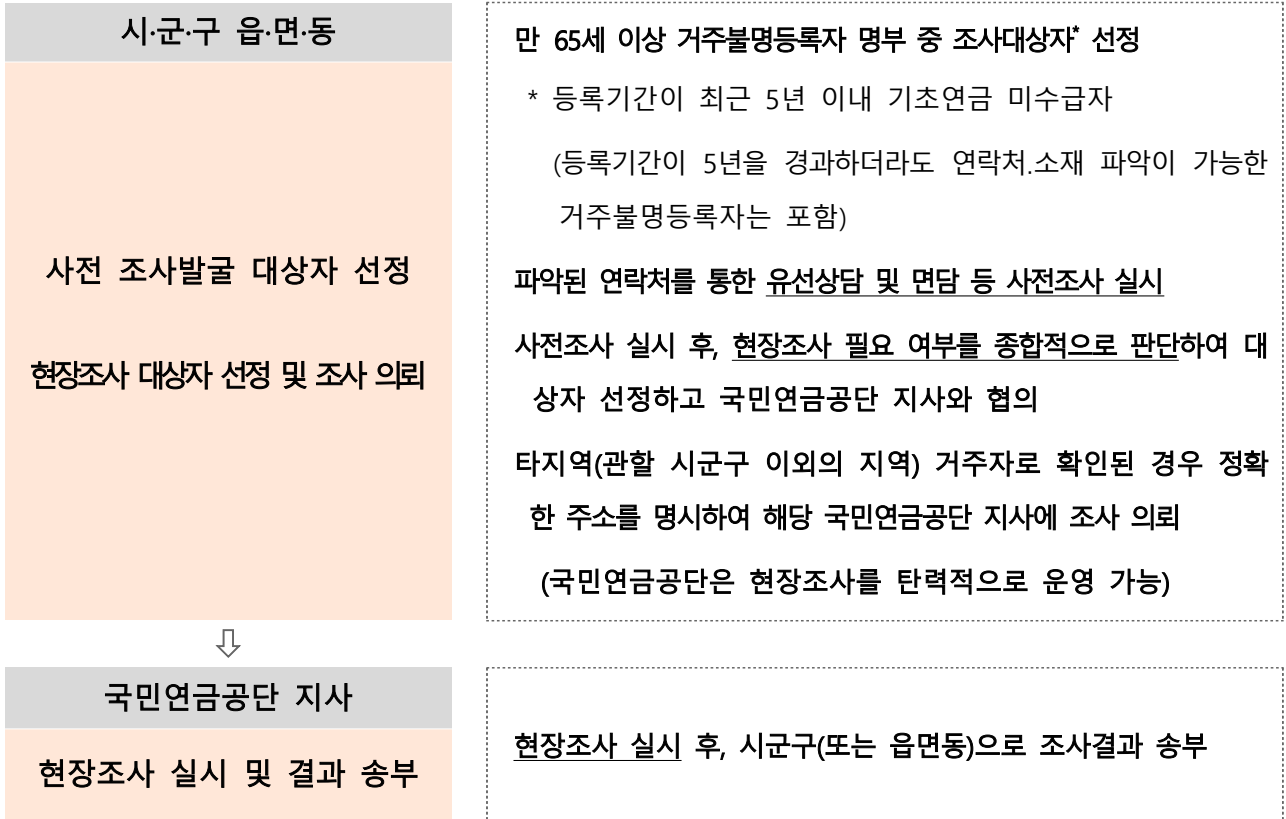
[ 국민연금공단 지사 ]

- ①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읍면동에서 현장조사 의뢰(양식1) 시 적극 참여
- ② 현장조사 실시 후 조사결과(양식1)를 관할 시군구(또는 읍면동)으로 송부
  - 기초연금 신청서를 받은 경우 징구 서류를 관할 읍면동으로 송부
  - (조사내용) 기초연금제도 인지 여부, 거주지역, 거주불명등록 사유, 기초연금 수령 여부, 미신청 사유, 향후 신청 의사
  - \* 사생활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사하고 주민등록 재등록 권유

- (신분 미노출을 원할 시) 신분 미노출 서비스를 위한 상담예약 안내문(반송용 봉투)을 가족, 지인 등에게 배부
- 기초연금 신청서류(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 등)를 징구하고 기초연금 신청 절차 진행

※ 발굴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방지 교육 철저 및 유출방지 협약서 반드시 징구

<거주불명 어르신 신규 수급자 발굴 방법>



3. 발굴 결과 분석 및 보고 : 2022. 12. 16. ~ 12. 31. [최종 '23.2.28.]

□ 읍·면·동

- 최종 발굴결과를 시에 제출(양식2) / 12.16일한
- ※ 발굴조사표는 수급자 관리에 활용 후 파기 또는 대외비 수준으로 관리

□ 시

- (1차 보고) 읍면동의 발굴결과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(양식2) / 12.23.일한
- (2차 보고) 조사결과 12월 31일 기준 처리 중인 자 및 보고 이후 신청자에 대한 적합 여부 등 최종 발굴결과 보고(양식2) / '23.2.10일한

## 2 홍보

### 1. 사전준비 단계 : 2022. 10. 27. ~ 11. 18.

- 국민연금공단 본부
  - 거주불명등록자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 통보(~11.4)
  - 행정복지센터 등에 안내문 비치, 지역 언론매체 활용 등 중심으로 실시
  - 거주불명등록자 신분 미노출 신청서비스 방안 마련
    - \* 반송우편 통한 상담 예약 → 거주불명등록자 상담(민원이 원하는 시간·장소 출장) → 실태 조사서 작성, 기초연금 신청서류 징구
- 국민연금공단 지사
  - 시와 협의하여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에 제출(~11.18.)
  - 홍보 대상지역 확정 및 행사연계 홍보 방안 등 마련
  - 신분 미노출 신청서비스 담당자 지정
- 시
  - 기초연금 홍보에 적극 협조
  - 국민연금공단과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

### 2. 실행 단계 : 2022. 11. 21. ~ 12. 9.

- 국민연금공단 지사
  - 집단거주지 방문을 통해 기초연금 혜택, 신청절차 등 제도 홍보
    - 거주불명등록자 상주지역(기차역, 버스터미널, 공원)에 기초연금 안내문, 현수막(시안 제공 예정) 게시
  - 특히,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함과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, 압류방지 통장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
- 읍면동
  - 이통장회의, 각종 행사를 통해 거주불명 등록자 기초연금 혜택 등 제도 홍보
  - 신분 미노출 기초연금 신청 건\*은 반드시 신분 재확인 이행 및 신청 절차 추진
    - \* 읍면동에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여 타인이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

## 4. 행정사항

### 시(경로장애인과)

-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실행계획 수립 / 11.11일한
- 국민연금공단지사와 현장조사대상 발굴 및 홍보 일정 등 협의 / 11.15일한
- 읍면동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실행계획 및 명부 통보 / 11.18일한

### 읍면동

- 거주불명등록자 조사대상자(사전조사, 현장조사) 현황작성 제출(양식1) / 11.25일한
- 현장조사 대상자 발굴조사표(양식1)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의뢰 / 11.25일한
- 이통장회의 및 각종행사를 통해 거주불명등록자 기초연금 혜택 등 제도 홍보(수시)
- 최종 발굴결과를 시군구에 제출(양식2) / 12.16일한

### 국민연금공단 지사

- 읍면동 현장조사 대상자 발굴조사표 의뢰 시 현장조사 실시 등 적극 협조
- 현장조사 결과 읍면동 및 시 송부 / 12.13일한

- 붙임 1. 거주불명등록자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 안내 1부.  
2. 제출양식 각 1부.  
3. 전년도(2021년)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발굴 결과 1부. 끝.